

캐나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Updated 2023-11-22

* 회칙 *

제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캐나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캐나다지부)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CANADA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 (KCBSA) 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협회는 비영리 스포츠 단체로서 교민체육향상의 발전과 대한민국 체육분야를 캐나다 사회에 널리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및 지회)

본 협회는 본부를 토론토에 두며 각 지회는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 위니펙, 오타와, 헬리팩스에 둔다.

제4조 (임원)

1. 본 협회의 임원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회장의 임명등으로 정한다.
2. 임원자격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민 체육향상을 위해 각종 대회를 주최, 승인, 관장한다.
2. 2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캐나다 복합 문화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3. 교민을 대표하는 각종 대내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다.
4. 지역한인간의 친목을 위한 각종 경기를 주최한다.
5. 야구 지도자 및 경기 운영진과 심판진의 양성에 힘쓴다.
6.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 2 장(가맹단체 및 회원)

제 1 절 회원의 자격 및 단체의 가맹절차

제 6조 본 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각 가맹단체(리그)를 두며 그 단체(리그)는 아마추어 야구(하드볼 및 소프트볼 포함)를 목적으로 한 단체(리그)로서 조직한다.

제 7조 가맹단체는 본 협회에 소속된 메이플립 리그(MAPLE LEAF LEAGUE) MLBL.CA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를 토대로 협회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제 8조 협회는 가맹 및 탈퇴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2 절 (회원 및 가맹단체의 권리)

제 9 조 본 협회의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1. 가맹단체 (리그) 에 소속된 팀의 대표는 협회 이사직 겸임가능
2.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및 각종 교육에 참가하는 특전
3.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후원

제 3 절 (회원 및 가맹단체의 의무)

제 10 조 본 협회의 회원 및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지닌다.

1. 본 협회의 규약 규정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당해년도의 회계결산서를 그 단체 (리그) 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 할 의무
3.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본 협회에 보고 할 의무
4. 본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의무
5. 본 협회는 회원 단체에 위임한 사업, 혹은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회원 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

제 3 장(기구 및 운영)

제 1 절 (이사회)

제1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며 이를 00명으로 구성한다.

제 12조 (이사의 임기)

1. 이사회는 이사장 1,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 할수 있다.

제 1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며 이사장이 이사회 1주전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소집 할 수 있다.

제 14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편성
2. 사업 계획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협회 재정을 위한 재정확보
5. 회칙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6. 회장선출
7. 기타 사항

제 2 절 (집행부)

제 16조 (구성 및 임기)

본 협회 집행부는 회장 1, 부회장 1-2, 비서실장 1, 수행 비서 1-2, 사무국장 1을 위시하여 그 아래로, 야구위원장, 소프트볼위원장, 어린이야구위원장, 기술/지도팀, 홍보/대외업무팀 등의 실무부서를 두며 각 집행부의 임원진 인선은 회장의 임명으로 정한다. 각 임원진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에 의한 연임이 가능하다.

제 17조 (임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또한 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행사 참석 시 협회로 부터 제반 비용을 지원 받는다.
2. 사무국장과 비서실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지시에 따라 본 협회 사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과 비서실장 및 각 집행부 임원들은 회장 지시에 따라 본 협회 사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특별기구)

제 18조 본 협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1. 상벌 위원회
2. 대외 위원회
3. 국제교류 위원회
4. 각 지회 단체

제 19조 (위원장)

1. 상벌위원회는 집행부의 임원이 당연 직이며 그 위원장에 사무장, 비서실장 그리고 리그위원장이 된다.
2. 대외위원회는 협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장, 부회장, 사무장, 비서실장을 임원으로 하며 회장의 임명으로 별도 및 추가 선임된다.
3. 국제교류 위원회는 협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장, 사무국장, 비서실장으로 선임된다.

제 20조 (상별위원회의 기능)

상별위원회는 경기 중, 경기 인으로서 혹은 경기단체(팀)로써 협회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발생했을 시 그 처벌의 수위와 내용을 결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나 단체에 포상을 결정한다.

단, 엄중한 처벌에 대한 팀 제명, 선수 제명에 대한 처벌은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회를 걸쳐 승인을 받는다.

제 4 절 (감사)

제 21조 (임무)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년으로 하며,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 22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감사는 법률/회계부분의 전문인으로써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1명을 선출하고 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을 그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5 절 (재정)

제 23조 (재원)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원으로 한다.

1. 각 가맹단체의 당해년도 등록비. (이사회에서 지정)
2. 외부단체 나 스폰서업체 등의 찬조금 및 지원금.
3. 협회의 목적을 초월하지 않는 기타 부대사업.

제 24조 (회계 년도)

본 협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로 마감한다.

제 25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절 (회장 선거)

제 26조 (선출 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출마자격: 최소 4년이상 협회의 임원/이사로 활동을 한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회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 총회에서 추천을 한자로 하며 2인 이상일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재직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 "나"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 1차 투표 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다"에 따른다.

마.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제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3.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4. 회장 역임 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고문으로 자동 추대한다.

부칙 : 본 협회의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